소득 · 세액 공제신고서/근로소득자 소득 · 세액 공제신고서(2016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)

※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(소속 회사 등)에게 제출하며,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
소득자 성명	엄민영	주민등록번호	730606 - 1079411	
근무처 명칭	주식회사 이그쉐어	사업자등록번호		
세대주 여부	[√] 세대주 [] 세대원	국 적	대한민국 (국적 코드 : KR))
근 무 기 간	2016.01.01 ~ 2016.12.31	감면 기간		
거 주 구 분	[🗸 거주자 [] 비거주자	거 주 지 국	대한민국 (거주지국 코드 : KR)
소득세 원천칭수세액 조정신청	[] 120% [] 80%[🕖] 100%	분납신청여부	[] 신청 [☑ 미신청	

인젋골제,할목 [] 전년과 동일[V] 변동

※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.

		인적공	공제	항목							각종 스	소득 · 세	액 공제 형	항목				
	관계 코드	성 명	기 공	본 제	경로 우대	출산 입양	자료		보험료						드등 사			
	내 · 외 국인	주민등록번호	부 녀 자	한 부 모	쟁배 인	6세 이하	구분	건강 • 고용등	보장성	장애인 전용 보장성	의료비	교육비	신용카드 (전통시장·대 중교통비 제외)	직불카드 등 (전통시장·대 중교통비 제외)	현금영수증 (전통시장·대 중교통비 제외)	전통시장 사용액	대중교통 이용액	기부금
١.		(공제 항목에 하는 인원수를 기재	1				국세청	1575430	5732179	0	82300	0	19650707	0	0	500	11250	0
인 적		사다 전환기를 가지 사녀 () 명)					기타											
공		엄민영	0				국세청	1575430	5732179		82300		19650707			500	11250	
제							기타											
및 소							국세청				-							
득							기타											
공 제							국세청											
명							기타											
세							국세청											
							기타						z.					

유의사항

- 1. "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" 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하는 비율란에 "√" 표시 합니다.
- 2. "분납신청 여부" 란은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합니다.

3. 관계코드

구 분	관계코드	구 분	관계코드	구 분	관계코드
소득자 본인 (소법 §50 ① 1)	0	소득자의 직계존속 (소법 § 50 ③ 가)	1	배우자의 직계존속 (소법 §50 ③ 가)	2
배우자 (소법 § 50 ① 2)	3	직계비속(자녀, 입양자) (소법 § 50 ③ 나)	4	직계비속(코드 4 제외) (소법 §50 ③ 나)	5*
형제자매 (소법 § 50 ③ 다)	6	수급자(코드1~6제외) (소법 §50 ③ 라)	7	위탁아동 (소법 §50 ③ 마)	8

- *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
- ※ 관계코드 4~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.
- 4. 연령기준
 - 경로우대 : (1945.12.31) 이전 출생 (만 70세 이상 : 연 100만원 공제)
 - 6세이하 : (2009.12.31) 이후 출생 (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)
- 5. "부녀자 공제"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정하여 그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.
- 6. "장애인 공제"란에는 다음의 해당코드를 적습니다.

100	구분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	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
	해당코드	1	2	3

- 7. 내·외국인 : 내국인=1, 외국인=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.
- 8. "직불카드" 등 란에는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(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포함된 금액은 제외)을 적습니다.

						,	- 1			(제24)	
	구분		지출	명세		지출구분	금액	한도(액	공제액	
11.				종(전	선)근무지	보 험 료		전	액		
m. 연금	연금보험료	국민인	연금 보험료		년)근무지	보 험 료	787500		액	787500	
	(국민연금,공무원		1-1-11-1		<u>()</u> 근무지	보험료	101000		액	101000	
보험 료	연금, 군인연금,	국민	! 연 금 보 험 료 공적연금보험료								
	교직원연금 등)	- 기- 기			년)근무지	보 험 료		인	액		
공제			연금모	험료 계							
		국단	민건강보험	종(전	선)근무지	보 험 료			액		
		(노인정	당기요양보험 포함)	주(현	년)근무지	보 험 료	739500	전	액	739500	
Ш.	보험료		-04-1	종(전	선)근무지	보 험 료		전	액		
		نــ	고용보험		년)근무지	보 험 료		전	액		
특			부 허	 료 계			1575430	CONTRACTOR DESCRIPTION OF THE PARTY OF THE P		1575430	
_					 기관차입	Call Print Cost Va Alban	1010100	RESOLUTION DE SENTIN		1010100	
		주택	임차차입금		자 차입	원리금 상환역	<u> </u>	작성방법	참조		
Н											
별			2011년 이전		<u> 크 미만</u>				-		
			차입분		~ 29년						
소		TI I	MEC		크 이상						
		장기	2012년 이호		거나, 비거치상환						
	주택자금	주택	2012년 이후 차입분(15년 이상)		_{대출} 타대출						
득	1 7-10				다 내 물 정금리이면서 비거	이자 상환역	H	작성방법	참조		
		저당			3심어진자 레기 치상환대출						
		차입금	2015년 이후	15년 교	치상환대출 정금리이거나 비거						
공			차입분	"	치상환대출 기타대출				-		
					10년~1 고경	기 다 내 물 정금리이거나 비거				-	
				5년	지상환대출 기상환대출						
제			주택자금								
				기부금		기부금이월역	H				
								작성방법	참조		
	기부금 (이월분)		지정기부금			기부금이월약 기부금이월약		1000			
	(이월문)					717692					
		-11 01 01 -	기부금이			1 101 701		H O I O II 40W O I	700101		
			금저 축(2000년			납입금액		불입액40%와			
		소기업		공제부금	1	납입금액		작성방법			
			청약	저축		납입금액		작성방법			
	주택마련		근로자주택	백마련저희	Ē	납입금액		작성방법			
	저축		주택청약	종합저축		납입금액		작성방법	참조		
IV.	. ,		주택마련저축	소득공제	세 계						
					조합 등			MONTH OF THE PROPERTY OF THE P	n to the state of		
_		20)14년 출자・투	-자분	벤처 등	출자 · 투자금역	<u>H</u>	작성방법	참조		
ユ					The second secon						
	투자조합	20	15년 출자·투	자분	조합 등	출자 · 투자금역	H	작성방법	참조		
밖	출자 등				벤처 등						
		2016년 출자 • 투		자부	조합 등	출자 · 투자금역	Н	작성방법	찬조		
의				10	벤처 등		9	1008		and the second s	
		_!	투자조합 출자	등 소득공	문제 계						
		① 신용	카드(전통시장・	대중교통서	나용분 제외)	사용금액	19650707				
소			• 선불카드(전통시			사용금액	0				
			영수증(전통시장			사용금액	1				
득			등시장 사용분	110110	10 6 9 9 7	사용금액	500				
	신용카드										
공	등사용		등교통 이용분	(8)		사용금액	11250				
0	액		(1+2+3+4+				19662457				
			· 신용카드등			사용금액	24232469				
제		① 본인	· 신용카드등	사용액(2	015년)	사용금액	15972328		1000		
		⑧ 본인	· 추가공제율/	사용분(20	14년)	사용금액					
		⑨ 본인	추가공제율사용	용분(2016년	면 상반기)	사용금액	11750				
			² 리사주조합 출		-	출연금액		작성방법	참조		
			용유지중소기업			임금삭감액		작성방법			
			기집합투자증			납입금액		작성방법			
		0	1001710					1000			

구분 서			,	네액감면·	세액공제	세액감면 · 공제 명세								
		입국목적 [] 정부간 협약 [[] 기술도입	계약	[] 「조서	특례제한법	」상	상 감면 [] 조세조약 상 감면				
	외국		기술	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		감면기긴		간 만료일						
	세액감면	근로자	외글	국인 근로소득	에 대한 감면	접수일	접수일			제출일 .				
			_		한 조세조약 상 면제	접수일					제출일			
		중소기	업	취업자 김		취업일					감면기간 종화	료일		
٧.				공 제 증			명세		한도액	공기	데대상금액	공제	율	공제세액
					사기술인공제 	납입금액			TIMBIDI			129	%	
세		연금			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	납입금액			작성방법 참조			또는	=	
액		계좌			연금저축	납입금액			L-	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15%	6	
750				연	금계좌 계									
감			보		보장성	보험료		5732170	100만원			129	6	
면			험	장애 '	인전용보장성	보험료			100만원			15%	6	
면			료	-	보험료 계			5732179						
및			의		세이상자 · 장애인 난임시술비	지출액		82300	작성 방법					
100			료	그 밖	의 공제대상자	지출액			참조			15%	6	
공			비		의료비 계	A MARIE S		82300						
제		특		소득자 본인		공납금 (대학원포함)			전액				\top	
	세	별	一	취학전 아동		(내 약원 포암) 유치원 · 학원비등			1명당 300만원					
		세		ネ・ 주・コニ		공납금			1명당 300만원			450	,	
	액	ΛII	육	대학생(대학원		공납금			1명당 900만원 전액			_ 15% _		
		액	비	장애인(명)	특수교육비								
	공	공			교육비 계									
		제		정치자금	10만원 이하	기부금액						100		
	제		-1	기부금	10만원 초과	기부금액						1		
			기	브	l정기부금	기부금액			작성방법					
			부	우리시	· 우조합기부금	기부금액			참조			15%	6	
			금	지저기보고 /조고다레 이)		기부금액						(25%	5)	
					부금 (종교단체)	기부금액								
				7	기부금 계								CHILD IN	
						국외원전:								
						납세액(오								
				외국납투	브세액	납세액(원 납세국					- 납부일			
				신청서제				-	국외근무:	7 -1		<u>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</u>		
				근무기:			•		<u> </u>	^				
		주 F	태고	다근차인근	이자세앤곡제	이자상혼		• •	•	-	30%			
		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		지출인					10%					
		철세백 세백층세		시 글 -	1				1070					

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제출 (

VI. 추가 제출 서류

2 조(저)그므지	종(전)근무지명			종(전)급여총액		종(전)근무지 근로소득	
2. 8(년)도구시 명세	종(전)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	_	-	종(전)결정세액		원천징수영수증제출 (X)
	축 등 소득공제 명 ×로 적습니다)	세서 제출여부	<u> </u>	제출 () ※ 연금계좌, 주택마련 해당 명세서를 제춬히	현저축 등 소득·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니다	신청한 경우

4.월세액·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·세액공 제 명세서 제출여부 (○ 또는 ×로 적습니다.)

1.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(0 또는 X로 적습니다)

제출 (

) ※ 월세액,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·세액군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5.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

② 기부금명세서(③ 소득 · 세액공제 증명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(

유의사항

- 1. 근로소득자가 종(전)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.
- 2.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 ·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3. "공제금액"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.